

의안번호	2200343
의 퇴 인	문금주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계번호	24D071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종합계획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8,900만원(연평균 1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제22조 및 제24조)	371	103	104	105	106	789	158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전남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남특별자치도(이하 “전남자치도”라 함)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남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0조(전남 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전남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3조(주민 투표에 관한 특 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0조(지역 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전남자치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1조(특례 부여 및 지원)	-전남자치도의 시장·군수는 전남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의 특례 부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전남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2조(종합 계획 수립)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4조(지방 소멸 극복 및 미 래성장 기반 조 성 종합계획심 의회)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자치도에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 심의회를 둠 -종합계획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함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의무규정
8	안 제25조(저출 생 대책에 대한 특례)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남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8조(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9조(농촌 활력촉진특구 지정)~제31조(지역 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전남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는 농촌활력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전남자치도지사는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재량규정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에서는 전남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33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제37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자치도지사는 국제회의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숙박·관광·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전남자치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 등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전남자치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38조(전기사업에 대한 특례)~제41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특례)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4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제48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전남자치도지사는 전남자치도 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항공산업 등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49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5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전남자치도지사는 전남자치도에 첨단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전남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토지·건물 매입비·사용료·대부료·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전남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전남자치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국제기구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57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제63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국가, 전남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남자치도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 -정부는 전남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전남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전남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 및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2	안 제10조(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

3	안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구체적인 주민투표 요건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 완화에 따른 주민투표 증가 건수 등을 추정 곤란
4	안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수습과정을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지역인재의 수 등을 추정 곤란
5	안 제21조(특례부여 및 지원)	×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할 특례의 내용, 전남자치도의 시·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22조(종합계획의 수립)	○	-
7	안 제24조(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	○	-
8	안 제25조(저출생 대책에 대한 특례)	×	-전남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9	안 제28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0	안 제29조(농촌활력 촉진특구 지정)~제31조(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위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농촌활력촉진특구 및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우선 구매 규모 및 단가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33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제37조(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 등을 추진하는 지원센터의 위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한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모,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 개발·조성을 위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38조(전기사업에 대한 특례)~제41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특례)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의 위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4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제48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4	안 제49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5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전남투자진흥지구의 위치·규모, 매각 대상이 될 국·공유 재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토지·건물매입비 등 지원 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국가 부담비율 상향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5	안 제57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제63조(국제물류 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	-국제물류특구의 위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물품의 종류, 세금감면규 모, 국제물류특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에 따라 전남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20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15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운영예산은 2억 2,600만원¹⁾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5,650만원임
- 안 제22조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전라남도의 유사 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
 - 2023년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²⁾
 -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추계기간 중 첫 해인 2026

1)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자료: 국무조정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2) 자료: 전라남도 2023년 예산서

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24조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위원 수는 23명이고 이 중 위촉위원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종합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료 인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전라남도 기본경비 내에서 지출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³⁾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따라서, 안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표 2]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5	15	15	15	15	75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4	95	96	97	98	480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2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전라남도의 유사 계획 사례 예산(2억 5,0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900만원으로 추계됨
 - 2023년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⁴⁾

[표 3]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의 수립	269	0	0	0	0	269

다.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안 제24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000만원으로 추계됨
 - 종합계획심의회 위촉위원 수를 15명으로 가정하고, 연 2회 회의를 개최

4) 자료: 전라남도 2023년 예산서

[표 4]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8	8	8	8	8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전남자치도 지원위원회, 종합계획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11조)	94	95	96	97	98	480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2조)	269	0	0	0	0	269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4조)	8	8	8	8	8	40
합 계	371	103	104	105	106	7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